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 연령 변경 >
■ 서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07호)

202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정 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 의견	2
1.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변경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서천호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8. 18.
3. 회 부 일 : 2025.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부터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전국 단위로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시행지침에 따라 검진대상이 만 50세 이상 69세 이하로 한정되어 70세 이상은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음. 이는 높은 노동 강도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이 큰 여성농어업인의 생애주기별 건강 지원이라는 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여성 농가 인구의 약 40%가 70세 이상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현행 법령에 검진 대상 연령이 명시되지 않아 지침에 따라 자의적으로 대상을 설정할 수 있어 제도 운영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규정하여,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의3제1항).

Ⅲ. 검토의견

1.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만 50세 이상”으로 변경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대상을 “여성농어업인”에서 “만 5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권 보장과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u>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u> 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3(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시행) ① ----- ----- ----- -----만 50세 이상의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시기·항목,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강검진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건강검진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현행법 제11조의3에 근거하여 여성농업인·여성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업 질환의 발견·예방에 특화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 사업임.

현행법은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여성농어업인'으로 규정할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법 시행령¹⁾에서는 농약·분진 등 특정 유해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
도록 하되, 연령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제도]

구분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및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
목적	여성농업인에 주로 발생하는 직업 질환 검진	여성어업인에 주로 발생하는 직업 질환 검진
대상자	<u>51~70세 여성농업인</u>	<u>51세 이상 여성어업인</u>
검진 주기	2년	2년
검진 항목	근골격계, 골절·손상위험도, 심혈관 계, 폐질환, 농약중독	6대 근골격계 질병, 골절위험, 뇌심 혈관계질환 위험, 청력이상

※자료: 1.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시행지침」, 2025.
2. 해양수산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시행지침」, 2025.
3.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2025.1.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령」 제4조(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11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농어업 작업 중 여성농어업 인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요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 인에게 여성농어업인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1. 농약
2. 분진
3.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업무 환경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

그러나,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실제로 운영되는 현황을 살펴보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매년 각 부처의 사업계획에 의하여 연령 등의 범위가 설정되고 있으며, 2025년에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의 전 연령층에게 검진을 실시하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70세만 검진 대상으로 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간 건강권 보장이 균등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임.

더욱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의 질병유병률은 8%로 전체 평균치인 5.8%에 비하여 높으며, 70세 이상 여성농업인 비중이 2022년 40.9%에서 2024년 43.1%로 증가하여 농업 현장에서 고령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므로, 특수건강검진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²⁾에서 제기되고 있음.

[연령별 농업인의 연령별 업무상 질병 유병률]

구분	2024년		
	농업인 수(명)	업무상 질병자 수(명)	업무상 질병 유병률(%)
총계	1,777,900	103,463	5.8
50세 미만	145,481	2,611	1.8
50~59세	289,684	8,203	2.8
60~70세	623,417	34,946	5.6
70세 이상	719,318	57,703	8.0

*연령대별로 성별 구분한 질병 유병률 통계는 작성하고 있지 않음.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통계청)

[70세 이상 여성농업인 현황]

여성농업인 수	2022년		2023년		2024년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인원수	비중
70세 이상	478,729	40.89	488,869	41.7	501,524	43.13
전 연령	1,170,957	100.00	1,172,219	100.00	1,162,696	100.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농업경영체등록 기준)

2)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2025.9.) 등

이에 개정안은 현행 특수건강검진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71세 이상의 여성농업인도 검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여성농업인과 여성어업인 간 특수건강검진 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고령 농업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문상 국가 등의 특수건강검진 실시 의무가 '모든 여성농어업인'에서 '50세 이상 여성농어업인'으로 변경되어 현재보다 의무적 검진 대상을 축소시키고 있음.

더욱이, 현행법 제11조의3은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의 목적 중 하나로 '모성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음. 모성권은 출산·양육과 연관된 권리³⁾로서 50세 미만의 가임기⁴⁾ 여성과 직접적 관련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따라 이들을 특수건강검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즉, 개정안은 특수건강검진 사업 대상자를 71세 이상의 여성농업인까지 확대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의도치 않게 50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의 수검을 제한⁵⁾할 수 있으며,

3) 현행법 제11조는 모성권 보장을 위하여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5조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성권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모성권은 출산·양육에 관련한 권리로 볼 수 있음.

4) 통계청은 가임기 여성을 15~49세로 설정하고 있음.

5) 개정안에 따라 만 50세 이상의 여성농어업인에게 특수건강검진 실시의무를 한정하더라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만 50세 미만 농어업인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농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는 법 체계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취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률안 규정 방식에 대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51~70세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질환 예방을 위한 검진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며, 추후 현장의견 등을 반영하여 지원 연령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참고로, 개정안에 따라 만 71세 이상의 여성농업인까지 특수건강검진을 확대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매년 약 154억원⁶⁾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17

6) (농림축산식품부) 여성농업인육성법(서천호 의원 발의) 예산 추가 소요 추계

연령	여성농업인수	연간검진 대상인원	검진비	검진관리비	합계
51~70세	585천명	146천명	158억원	18억원	176억원
51세~	1,087천명	272천명	297억원	33억원	330억원
71세~	502천명	126천명	139억원	15억원	154억원

-연간검진 대상인원 : 여성농업인수× $\frac{1}{2}$ (격년주기)×검진율 50% 적용

-검진비 : 검진인원의 90%× 22만원×50%(국비)+검진인원 10%×18만원(골밀도검사 제외)×50%(국비)

-검진관리비 : '26년 정부안을 기준으로 인원 증가 비율에 따라 산정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인원 수 기준